

주유소 상표표시제 시행

金 春 圭

〈동력자원부 석유수급과 행정사무관〉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는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지난 1990년 356백만배럴로 전년대비 24.1% 증가에 이어 1991년에는 425백만배럴로 19.2%가 증가하는 세계 10위의 대소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주요 산유국이나 외국 석유기업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석유의 생산-공급체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질유를 중심으로 볼때 생산자인 정유사와 정유사로 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대소비처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도매업인 대리점, 대리점으로부터 휘발유·등유·경유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주유소의 가장 이상적인 3단계 유통구조로 되어 있으나, 지난 1981년 3월 14일 석유사업법 제17조에 의한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조정명령」의 발령이나 동년 8월 27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대정유사 시정명령등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오히려 시장내부질서를 흐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거기에 정유사간의 치열한 시장확보경쟁은 석유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시장외적으로는 민주화의 추진과 경제규모의 확대등으로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등 민간자율성이 확대되고, UR/서비스 협상의추진등 일련의 시장개방 움직임은 국내 외경제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내외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석유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1990년 6월 공청회를 통하여 석유산업의 장기발전을 저해하거나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업계간 또는 업계내부의 업소간 경쟁과 경영합리

화 노력을 통하여 품질개선, 가격경쟁, 각종 부대 서비스제공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개선 과제로서 ①주유소 설치기준 완화, ②정제업자의 석유유통부문 참여제한 조치(3.14 조정명령)의 해제, ③주유소등 석유판매업의 상표표시제 확립, ④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 허용을 통한 유통단계 간소화, ⑤석유제품가격 자유화등을 선정하였고, 이과제는 1991년 7월 10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규제완화시책의 과제로 채택되어 1991년 9월 1일에는 휘발유, 등유가격 자유화와 3.14 조정명령을 폐지하는 한편, 그해 11월 4일에 개정공포된 석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종전보다 절반 이하로 단축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의 별도 기준설정 권한을 축소하는등 주유소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게 되었다.

2. 상표표시제 실시의 배경

이와함께 추진되고 있는 주유소 상표표시제(Pole Sign)란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 해당 정유사가 책임공급하는 석유제품만 판매토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주유소는 모두 업소에 5개 정유사중 하나의 상표를 표시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는 주유소가 당연히 표시한 해당 정유사의 기름을 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주유소가 표시에 관계없이 여러 정유사(일부는 5개정유사 모두의 기름을 혼합 또는 교체판매)기름을 공급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공급자의 효과적인 자사제품 품질관리나 정부의 품질관리의무 부여가 어렵고, 주유소업계도 생산적인 재무자나 경영개선을 통한 발전과 수익확대를 꾀하기 보다는 거래조건 교섭에 의한 수익추

구에 치중하고 있어서 유통질서 문란의 주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3. 추진현황과 주요내용

이러한 상표표시제는 1990년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하던중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하던 끝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법개정(안)에서는 제외하여 별도로 추진토록 하여 지난 1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의거 석유부문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를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2-1호로 상표표시제 시행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고, 1월 30일에는 제도실행을 위한 당부지침을 관련업계 및 시·도에 시달함으로써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표표시제 시행 주요내용》

- 근거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등)
- 대상업소 :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 대상유종 : 휘발유, 등유, 경유
- 주요 규제내용
 - 표시된 상표의 정유사가 공급책임을 지는 제품만 판매
 - 현재와 같이 여러 정유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유소 자체상호만 표시
 - 정유사와 제품교환과 수입제품의 판매는 허용하되, 제품규격을 사전에 공시하여 그 규격에 맞는 제품만 공급
- 상표표시 위치·방법 : 지주이용간판, 캐노피, 옥상, 주유기 및 유조차
- 시행시기 : 1992. 4. 1부터 시행하되 3개월의 지도기간을 거쳐 7.1부터 단속

- 계약체결 : 정유사/대리점, 대리점/주유소간에 제품공급계약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허가관청(시·군)에 통보
- 벌칙 : 1.5억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이에 따라 정유5사는 지난 3월 31일까지 각각 자사가 생산하는 휘발유·등유·경유의 품질규격을 주요일간신문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상표표시계약 체결은 지난 4월 30일까지 전국의 영업중인 115개 대리점 모두가 정유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유소의 경우도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6월말 현재 전국 4,656개 주유소중 97%인 4,516개가 계약함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미계약 주유소도 점차 상표표시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표시제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업소의 상표 및 간판의 정비는 행정력을 동원한 강제정비 방법보다는 업계의 협조와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업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를 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표표시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현황, 미계약업소 명단, 현재 표시상표와 금번 계약체결 상표가 다른 주유소현황을 작성하여 관련 업계와 시·도에 통보함으로써 간판의 조기정비와 사후관리가 용이토록 하고, 대국민홍보와 간판을 정비하는 동안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표표시제 홍보팜플렛 166만매를 제작하여 상표표시 이행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정유사별로 에너지절약 로고와 상표표시시행 업소임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된 현수막을 해당주유소에 내걸도록 조치하였다.

4. 앞으로의 대책

요즘 유통업계는 업소의관을 선진국처럼 고객 편의 위주로 미화·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편의점병설과 셀프주유소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고객에게 생활용품을 제공하거나 주유원

〈주유소 상표표시계약 현황('92.6.30 기준)〉

• 시·도별 현황

		대상주유소	계약 체결	미 체결	체결율(%)
서 울		366	355	11	97
부 산		195	192	3	98
대 구		132	111	21	84
인 천		79	77	2	97
광 주		94	94	-	100
대 전		56	54	2	96
경 기		747	726	21	97
강 원		264	250	14	95
충 북		329	326	3	99
충 남		528	509	19	96
전 북		397	395	2	99
전 남		378	365	13	97
경 북		501	485	16	97
경 남		540	529	12	98
제주		49	48	1	98
計		4,656	4,516	140	97

• 정유사별 현황

	유 공	호 유	경 인	쌍 용	극 동	計
대상주유소	1,709	1,439	583	580	345	4,656
계약주유소	1,685	1,375	574	554	328	4,516
계약율(%)	99	96	98	96	95	97

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고객서비스를 하는등 적극적이고 고객지향적인 판매전략과 활동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활동은 그간 서비스부채·세일즈부채의 대표적 업종으로 일컬어지던 석유유통분야가 상표표시제의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유통구조개선과 업계의 자기쇄신적 노력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부는 이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보완대책과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

부와 관련단체·업계·학계를 망라한「석유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대책반」을 구성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석유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대책반」은 동자부 석유수급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구체적 작업을 하게 된다.

각팀별 작업결과를 전체회의에서 토론·수렴하는 방식으로 하여 오는 10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92-1호)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1992년 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자가 자기의 영업장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표시·광고의 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 행위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 서비스마크 또는 기타 당해상품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징표시(이하 "상표"라 한다)를 풀사인, 주유기, 유조차등 운

반용구 및 기타 영업장소의 벽면등에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의 적용대상사업자는 주유소,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직영점 또는 대리점으로 한다.

제 4 조(적용대상 석유제품) 이 고시의 적용대상 석유제품은 휘발유, 경유, 등유로 한다.

제 5 조(부당한 표시광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3. 하나의 영업장소에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4. 석유정제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부 칙

이 고시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표표시제 시행 지침

1. 목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등의 상표표시제도 확립을 위하여 1992. 1. 28 별첨『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점 고시』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업계별 조치하여야 할 세부업무 처리내용등을 정함.

2. 상표표시제 시행 세부내용

- 대상사업자 : 주유소·대리점·정유사
- 대상 유종 : 휘발유, 등유, 경유
- 상표의 사용 및 표시
 - 1업소당 1정유사 상표만 사용

※정유사 상표표시를 하지 않는 업소도 인정 (정유사 상표게시 불가)

-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 : 현행 제품공급계약을 사용하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기할 것.
- 업소의 상표표시 또는 게시방법
 - 기본원칙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표시
 - 표시장소·간판 종류 : 지주이용간판, 캐노피에 부착한 간판, 옥상간판, 주유기, 유조차·주유소건물·담장등의 벽면도색 표시는 불가함. 다만, 기존 주유소중 현행 표시된 것과 상표표시가 일치하게 될 경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유소 재도색시나 신규 주유소의 경우는 벽면이용 표시는 불가함.
 - 표시내용
 - 지주이용간판, 캐노피, 옥상간판 : 『정유사별 상표법에 의한 등록상표와 주유소 명칭』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외에는

<분야별 구성과 활동내용>

	팀 장	반 원	활 동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질서 확립 	석유수급과장	정유사 및 석유협회 업무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의 수평직/수직적 「공정경쟁규약」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연된 가격경쟁을 품질/서비스경쟁으로 조기전환 - 정유사의 계열대리점과 비계열대리점에 대한 차별적 거래 예방 - 상표표시제 본격시행과 관련 주유소가 우려하는 「주유소의 정유사와의 예측화」 방지장치 마련 ○ 주요 거점도시별 수급 및 수송체계 관련자료를 정비, Up-Date하여 석유유통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 정유사-주유소간 직거래허용에 대비, 「대리점의 지역별 거점 공급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보완장치 강구 ○ 유통단계별로 기능에 상응하는 적정마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마진산정 기초자료 및 풀제시 ○ 1991. 11. 15 시행한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 결과를 평가 ○ 주유소허가관리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도시별 수급 및 수송 체계 	油關公조사 부장	유통협회 전무, 대한송유관공사 기획조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단계별 적정마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허가 관리 	유통담당 사무관	주유소협회전무, 정유사 소매부장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응용하여 표시가능

- 주유기, 유조차 : 정유사 상표 또는 정유사 명칭만 사용가능

○시행시기

- 1992. 4. 1부터 시행하되 3개월간의 업계지도 계몽기간 설정
- 1992. 7. 1부터 업소단속실시 및 위반업소 처벌

3. 기관별 세부시행내용

가. 업계(주유소·대리점·정유사)

(1) 주유소·대리점

- 상표표시제를 시행할 업소는 1992. 2. 29까지 각각 대리점·정유사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관청(시·도 또는 시·군)에 동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동내용을 관련 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함.
- 상표표시 간판제작 설치 : 1992. 3. 31까지 상기 『업소의 상표표시 또는 게시방법』에 따른 업소의 상표표시 간판을 제작설치 완료할 것.
 - 상표표시제 미실시 업소는 업소내의 정유사 상표표시 또는 게시물 제거(주유소를 표시·안내하는 명칭등의 사용은 가능)

(2) 정유사

- 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한 자기회사 제품 생산규격(품질수준)을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규격 항목에 준하여 2개 이상 일간지(경제지 포함)에 공시하고, 당부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92. 3. 15까지 보고 할것(규격 변경시에도 같은 요령으로 5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
 - 상표표시 업소에도 이를 게시할 것.

(양식例)

	영업업소수	상 표 표 시 업 소 수							미표시업소
		유 공	호 유	경 인	쌍 용	극 통	기 타	소 계	
주 유 소									
대 리 점									

- 기준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상표표시계약 체결 현황을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석유협회에 보고하고, 석유협회는 이를 5일 이내에 당부에 보고할것.
 - 최초 보고는 1992. 2. 29 기준으로 3. 15까지 당부에 보고

나. 시·도(시·군)

- 대리점, 주유소의 제품공급계약 사본을 '92. 2. 29까지 접수하고, 상표표시제 시행업소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 감독 할 것.
- 반기별 판매업소 변동사항 보고내용에 상표표시제 시행업소 현황을 추가하여 보고(최초 보고는 2. 29을 기준으로 3. 15까지 보고)
 - 보고양식
- 상표표시제 시행신고 업체가 1992. 3. 31까지 상표표시 간판을 설치완료했는지 여부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
- 1992. 3. 31이후 상표표시제 미실시 업소가 정유사 상표를 표시 또는 게시한 경우『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철거토록 조치할 것.
 - 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상표표시업소에 대한 단속 및 품질검사 방안과 미표시 업소에 대한 단속 및 품질검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1992. 3. 15까지 당부에 보고
 - 상표표시업소에 대하여는 정유사가 보고한 제품생산 규격을 기준으로 업소에 대한 품질 검사 방법 강구
 - 상표 미표시 업소에 대한 불량유류 유통근절 대책 및 품질검사 강화방안 강구
- 정유사별 제품의 특성등에 대한 공시 또는 대 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1992. 3. 15까지 당부에 보고